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2조)

-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 기능(안 제3조)

-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구성 및 임원(안 제4조 ~6조)

-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2) 위원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임

○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
-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실무협의회(안 제13조)

-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동의안은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

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전국 47개 단체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최근 도시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와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파괴 및 상권의 퇴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영등포구 내에도 이러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소통을 통해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이번에 제출된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제 345 호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 및 임원(안 제4조 ~6조)

-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2) 위원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임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실무협의회(안 제13조)

-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확산 중, 방지대책 시급

- 1)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2)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임

나.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

- 1) 최일선에서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범 국민적 상생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

붙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고문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고문은 협의회 임원(회장)을 역임한 자치단체장으로 하되,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 ④ 사무총장은 협의회 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⑤ 고문은 협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 하며 운영은 사무총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총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5조의1(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회의, 회장단 회의, 실무협의회 등 회의소집 통보 및 준비
2. 사업비 진행 및 결산보고
3. 회계감사 준비 등 재정관리
4. 법·제도 개선 관련 협력업무 총괄
5. 협의회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사업 추진 실무
6.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추진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